

이차전자·차세대 통신까지 전담심판 확대해 첨단기술 집중지원!

- 특허청, 최고의 심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부담 완화 -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자,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①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②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③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①심판부 운영체계 개편: 이차전자·차세대 통신까지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23. 10월)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자('24. 3월)와 차세대 통신('24. 5월)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자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붙임1]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하여 배정('24. 1월)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분야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

<②심리절차 개선: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신속처리>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24. 1월)한다. 특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데,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 (특허법 제92조의2)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설정등록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 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조치이다. [붙임3]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24. 3월)한다.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붙임4]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24. 3. 15. 시행)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붙임5]

◁⁸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 등▷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24. 3. 15. 시행)으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 심판에 생소한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어들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6]

또한,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개통('23~'25년 3개년 계획 중 1개년 완료)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가 최소화되고, 인공지능기술로 증거서류의 자동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이 강화된다. [붙임7]

국선대리인 서비스도 대리인의 전문분야와 심판사건 기술분야 매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3기 체제로 개편('24. 1월)된다. 참고로 제2기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52.8%('22. 1월~'23. 12월)로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아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붙임8]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마정운 (042-481-5879)
		담당자	서기관	한중섭 (042-481-5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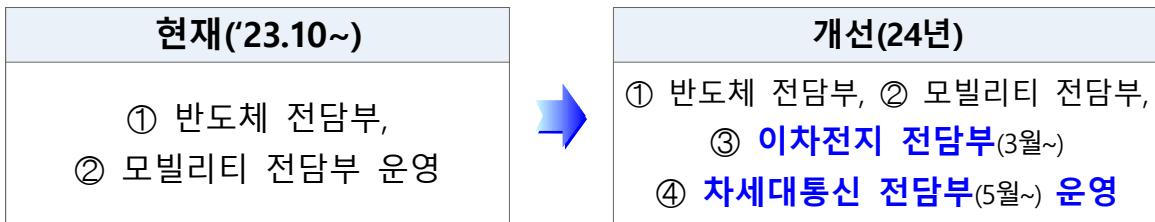
□ **첨단기술분야 전담심판부 확대(2개 → 4개)**

○ **(배경)**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첨단기술분야 사건일수록 기술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

-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분쟁은 기업경쟁력, 경제안보 측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특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관의 기술전문성 확보 필요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추진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건 전담심판부 확대(2개→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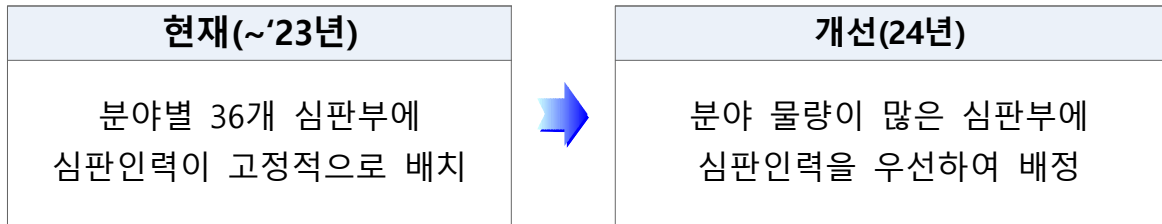
- 전담심판부 심판관은 전공자(박사 등),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하고 첨단기술 심판사건을 전담 처리



○ **(기대효과)** 국가전략기술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

□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인한 처리 기간의 불균형 해소**

- **(탄력적 심판인력 운용)** 분야별 36개 심판부에 고정적으로 운용하던 심판인력을 심판 청구물량이 많은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치



- **(기대효과)** 바이오 기술분야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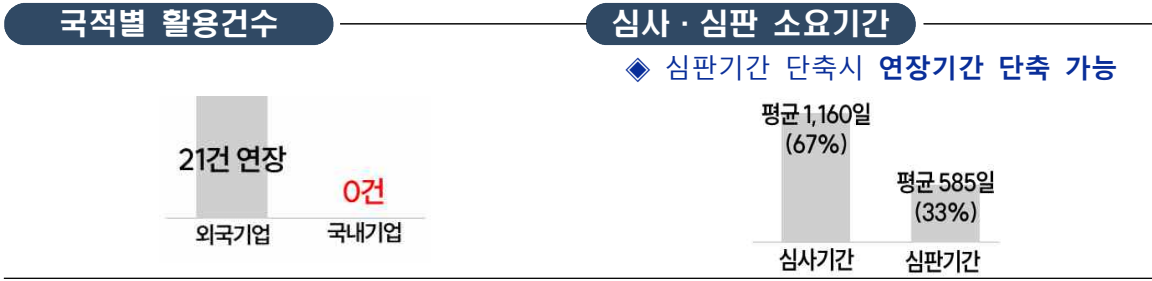
□ **신속처리 필요성이 큰 사건은 선별하여 집중처리**

- **(배경)** 최근 심사처리 지연으로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가능한 심판사건 증가 추세**

* (특허법 제92조의2) 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특허권 설정이 지연되어 등록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 '22.上 35건 → '22.下 66건 → '23.上 108건 → '23.下 209건로 증가세

- 동 제도는 첨단기술, 원천기술 등 지재권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서 적극 활용
- 현재까지도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외국기업들이 주로 활용*하였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분야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
- * 외국 핵심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시 타국에서 이미 만료된 특허권이 국내에서는 존속함으로써 국내기업에 피해 발생(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 **(추진내용)**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하여 신속히 처리

* '심사청구일로부터 36월 초과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판'임을 심판시스템에서 안내 → 심판관은 직권으로 신속심판 결정 후 조속히 처리

- **(기대효과)**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을 심판단계에서 선별하여 신속처리하는 핀셋 처방으로 존속기간 연장되는 것을 최소화

□ 양당사자가 다투는 당사자계 심판

- **(집중심리)** 양당사자가 다투는 당사자계 심판은 평균 3회 공방 후 심리종결*, 심판장의 심리지휘 강화** 등 집중심리 절차 강화

* 2회 공방 후 구술심리 기일지정, 구술 후 최종 의견기회는 1회만 부여 등

** 새로운 주장·증거가 없는 의견서의 경우 부분 송달시 상대방 답변기간 미부여 등
(답변서·의견서 부분송달은 수석심판장·심판장의 전결사항)

- **(기대효과)**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 감소 기대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

심판참고인 제도란?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하려는 제도

* 미국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를 모델로 심판제도에 도입

- **(도입 배경)**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추진내용)**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특허법 개정("24.3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적극적 제도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산업계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심판참고인의 의견 청취

- (예시) ‘생명중단 장치’에 대한 특허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지에 대하여 ‘의료윤리학회’ 또는 ‘의료윤리에 능통한 법학자’에게 해당 의견서 제출 요청

** 특허법 시행규칙에 심판참고인 선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규정

현재	개선("24.3~)
①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청취	① 기술적 내용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청취, ② 산업계 영향, 법률쟁점 등은 심판참고인 의견청취

- **(기대효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이바지

□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란?

- '심판청구 직권보정'이란 심판청구서에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정요구서 등을 발송하지 않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것을 말함

- **(도입 배경)** 현행 「특허법」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판 지연이 발생
- **(추진내용)**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사항은 보정요구 없이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직권보정제도 시행(‘24.3)

현재	향후(‘24.3~)
경미하고 명확한 하자도 당사자에게 보정하도록 요구	경미하고 명확한 하자는 심판장 직권 으로 보정가능 (등록원부 : 김연아, 심판청구서 : 김연아 → 김연아로 직권 보정)

* (예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사건의 표시에 ‘특허번호 10-1234567’, 피청구인(특허권자)에 ‘김연아’라고 기재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번호 10-1234567의 특허등록원부에서 특허권자는 ‘김연아’인 경우

- **(기대효과)** 직권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이 불필요하여 출원인의 편의가 도모되고 심판 절차의 지연을 방지

□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3개년 계획 중 1개년 완료)**

- **(추진 배경)** '08년 이후 개발이 全無,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는 노후화된 심판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대·내외 개선 요구 증가
- **(추진 내용)**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 수립·추진*

*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에 개선방향 제공, 개발진행·완료사항에 대해 피드백

대민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서류 접수 편의성 개선('23) 완료 ▶ 증거의 온라인 제출 방식 개선('23) 완료 ▶ 디지털 송달체계 구축('23~'24)
심판 방식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심판방식업무 자동화('23~'24) ▶ 제증명시스템(서류철 열람/복사) 고도화('24)
심판 심리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결문 점검·지원 시스템 구축('25) ▶ 심리지원·증거관리 기능 개선('24) ▶ 유사 심판결문 자동 추천('25)
심판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시스템 성능 개선('25) ▶ 외부기관 연계 강화('25)

- **(('23년 1차년도)** 자료 제출 및 송달 편의 · AI 기반 심판방식 자동화
 - (온라인 제출) 서식 자동입력 및 흠결 자동점검 지원, 증거서류 제출 파일 종류 확대(hwp, doc 등), 서증 통합 조회 화면 구축
 - (멀티미디어 파일) 동영상 증거 등의 온라인 제출 및 송달 기능 구현
 - (AI 기반 심판방식) AI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 파일에서 방식에 필요한 정보 추출하고 자동 방식을 위한 서류별 규칙 적용
- **(기대효과)** 심판청구인의 편의성 강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대리품질 향상**

- **(배경)** 국선대리인 2기 평가결과, 맞춤형 배정 등 개선사항 도출

< 국선대리인 2기('22.1~'23.12) 평가 결과 >

- **(운영성과)** 72건 선임, 승소율 51.3%, 만족도 82점 등
 - *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수행한 피청구인의 승소율은 19.5%에 불과
- **(개선요구)** 대리인 풀에서 순차 임의배정하나, 상황별·사건별 대리인 배정 검토 필요

- **(추진내용)** 국선대리인의 활동지역 및 전문분야 데이터베이스化, 당사자 거주지, 사건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배정으로 대리품질 향상
- **(기대효과)** 대리인이 없는 중소기업,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